



보도시점 2023. 6. 6.(화) 11:00
6. 7.(수) 조간

배포 2023. 6. 5.(월) 16:00

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유통 원천 차단

- ①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,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
- ② 종자 유통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을 37개로 확대
- ③ 엑스-레이(X-ray) 장비 및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iving Modified Organisms, 이하 LMO)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, 민간 전문가,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

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·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.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*하고, 우편·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**으로 강화하고,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.

* (현행) 소량의 종자(소립종 100g 이하, 중·대립종 500g 이하)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 증명서 제출 면제 → (개선)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

** (현행) 과태료 부과(1회 10만원, 2회 20만원, 3회 40만원) → (개선) 벌금(300만원 이하) 적용,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

둘째, 종자의 출원, 생산·수입 판매 신고,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를 강화한다. 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·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* 품목에서 37개**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,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(37개 품목)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. 아울러,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,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.

* 8개 품목 : 콩, 옥수수, 유채, 면화, 밀, 아마, 알팔파, 주키니호박

** 37개 품목 :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가 개발·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, 종자용,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(붙임2)

셋째,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종자의 수입·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. 우선, ①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, ②통관 단계에서 엑스-레이(X-ray)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. 아울러,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
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“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.”라고 하면서, “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,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- 붙임 1.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
2.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국경검사 대상 목록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협력정책관실 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경희 (044-201-2071)
		담당자	사무관	박수현 (044-201-2074)
	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	책임자	과 장	문태섭 (044-201-1891)
		담당자	서기관	오동진 (044-201-2479)
	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	책임자	과 장	이 진 (054-912-06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현 (044-912-0612)
	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	책임자	과 장	조경규 (054-912-0150)
		담당자	사무관	조용형 (054-912-0165)

분 류	주 요 대 책
① 수입(통관) 단계	① 모든 수입종자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* 소량종자(소립종 100g, 중·대립종 500g)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해제(관련고시 개정) ② 우편·특송을 통한 수입식물 검역미신고 시 제재 강화 * 과태료(1회 10만/2회 20만/3회 40만) → 벌칙(300만원 이하 벌금) 적용(식물방역법 개정) ** 고의로 미신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(식물방역법 개정) ③ 검역신고·검역증명서 첨부 의무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
② 국내 생산·유통 단계	①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·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확대 * ('23년) 8개 품목 → ('28년) 37개 품목¹⁾) ② 종자원에 기 등록된 37개 품목에 대한 LMO 전수검사 실시 ③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·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* 대상 종자, LMO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LMO 검사 절차 등 신설(종자산업법령 개정) ④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견지 및 유통 종자 모니터링 강화 * 면화, 유채,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해 농가 희망시 파종 전 LMO 검사 무상 실시
③ 역량 강화·피해지원	① 종자 LMO 검사 전문성 제고 * 유통관리과·수도권 지원 신설, 국제종자검정센터 직제화, 조사·검사인력 확충 ② 수입식물 X-ray 검색역량 강화 * 통관단계에서 X-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 확대 ③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예산 확보 * LMO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

1)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가 개발·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, 종자용, 사료용 또는 농업·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

※ 「LMO 통합고시」 제3-27조제2항 [별표3-2]

번호	품 목	영 문 명	학 명
1	감자	Potato	<i>Solanum tuberosum</i>
2	까마중	Black Nightshade	<i>Solanum nigrum</i>
3	담배	Tobacco	<i>Nicotiana tabacum</i>
4	렌즈콩	Lentil	<i>Lens culinaris</i>
5	멜론	Melon	<i>Cucumis melo</i>
6	면화	Cotton	<i>Gossypium hirsutum</i>
7	밀	Wheat	<i>Triticum aestivum</i>
8	벤트그라스	Creeping Bentgrass	<i>Agrostis stolonifera</i>
9	벼	Rice	<i>Oryza sativa</i>
10	사과	Apple	<i>Malus domestica</i>
11	사탕무	Sugar beet	<i>Beta vulgaris</i>
12	아마	Flax	<i>Linum usitatissimum</i>
13	알팔파	Alfalfa	<i>Medicago sativa</i>
14	옥수수	Maize	<i>Zea mays</i>
15	유채	Argentine Canola	<i>Brassica napus</i>
16	유채	Polish Canola	<i>Brassica rapa</i>
17	자두	Plum	<i>Prunus domestica</i>
18	장미	Rose	<i>Rosa hybrida</i>
19	치커리	Chicory	<i>Cichorium intybus</i>
20	카네이션	Carnation	<i>Dianthus caryophyllus</i>
21	콩	Soybean	<i>Glycine max</i>
22	토마토	Tomato	<i>Solanum lycopersicum</i>
23	파파야	Papaya	<i>Carica papaya</i>
24	호박	Squash	<i>Cucurbita pepo</i>
25	가지	Eggplant	<i>Solanum melongena</i>
26	강낭콩	Bean	<i>Phaseolus vulgaris</i>
27	사탕수수	Sugarcane	<i>Saccharum sp.</i>
28	페튜니아	Petunia	<i>Petunia hybrida</i>
29	피망/파프리카	Sweet pepper	<i>Capsicum annuum</i>
30	포플라	Poplar	<i>Populus sp.</i>
31	유칼립투스	Eucalyptus	<i>Eucalyptus sp.</i>
32	홍화	Safflower	<i>Carthamus tinctorius</i>
33	동부	Cowpea	<i>Vigna unguiculata</i>
34	겨자(갓)	Mustard	<i>Brassica juncea</i>
35	팔레놉시스	Moth orchid	<i>Phalenopsis sp.</i>
36	카사바	Cassava	<i>Manihot esculenta</i>
37	밤	American chestnut	<i>Castanea dentata</i>
38	기타	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·사료용·농업·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	

* 자료출처 : BCH·OECD(Biotrack)·ISAAA 웹사이트